



Choi, Kim & Par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3435 Wilshire Blvd., Suite 224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480 - 9100
Fax (213) 480 - 9107

www.ckpcpas.com

OFFICES IN:

LOS ANGELES, CA
SAN DIEGO, CA
SAN MATEO, CA
IRVINE, CA
MONTGOMERY, AL
LAGRANGE, GA
FORT LEE, NJ

미국 현지법인 주재원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및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본 보고서의 내용은 **CKP 회계법인**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며,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와 관련 문의 사항 및 관련 업무 진행에 대한 문의는 윤희식 회계사에게 hyongsikyoon@ckpcpa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만불이상 은행계좌 다 들여다본다”

어느 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다들 공감하십니까?

미국 국세청에서는, 해외계좌를 가지고 소득을 누락보고하므로써, 미국에 낼 세금을 포탈하는 미국시민, 영주권자 및 기업등을 압박할 목적으로 전세계 금융기관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에 EU 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도 동참하면서,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 금융계좌 보고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2013년 6월 30일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해당 조약이 발효되면, 2015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에서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서 요구하는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반대로 미국 IRS 에서 미국내 한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수집/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0년에 발효된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US Person (“세법상 미국인” - 뒤에서 설명) 은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를 지고, 이와 별개로 외국 금융기관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 들은 FATCA 규정에 따라 그들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 특정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소유한 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나 특정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 (Substantial Ownership Interest)(예: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 기준으로 직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Foreign Entities) (이를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이라고 함)이 소유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IRS 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계좌번호, 계좌의 잔고 또는 금전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 계좌 소득과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미국 법을 준수해야하는 금융기관들은 이 이외에도, 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금거래보고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란 고객이 1 일 \$10,000 을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그 세부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 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란 고객의 자금의 원천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없거나, 자금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는 단순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IRS 및 한국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소득의 각각 보고시 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세법상 미국인”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의 (1) 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 “세법상 미국인 (US Person)” 이라고 보나, 예외적으로 (4) 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미국인” 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 입니다.
- (2)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 입니다.
- (3) 일정기간 이상 체류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 (resident alien) 으로 미국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12 년 Tax Return(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은 ① 2012 년 31 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2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2 년 (체류일수의 100% count), 2011 년(체류일수의 1/3 (33.33%) count), 2010 년 (체류일수의 1/6 (16.67%) count) 3 년을 합하여 183 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 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 (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 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 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한다.) 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 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이 외국에 거주한다던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 IRS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 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거주 외국인에 해당 합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만,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미국세법에서의 거주자는 그 폭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세법에서의 “거주자” 및 미국세법에서의 “거주자” 로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지국의 판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금융계좌 보고

“세법상 미국인”으로 판명되면, 1년 (1월~12월)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입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i) 고의가 아닌 경우, 벌금이 \$10,000 까지, (ii) 고의인 경우, 벌금이 \$100,000 또는 계좌의 절반 (보통 6년전까지 소급) 까지 + 형사소추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발효된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에 따라 “세법상 미국인”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 금융자산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은 (1)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들과 (2)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 (비미국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 (Counterpart) 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 등이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미국에 사는 “세법상 미국인”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이 12월 31일 현재 \$50,000 이 넘거나 일년중 한 번이라도 \$75,000 이 넘는 경우 (기혼자로서 부부공동으로 세무신고할 경우 \$100,000 와 \$150,000), Form 8938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의 보고한도는 \$200,000 와 \$300,000 (기혼자로서 부부공동으로 세무신고할 경우 \$400,000 와 \$600,000)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벌금이 \$10,000 + IRS 통지를 받은 후 매월 \$10,000 더해져 최고 \$50,000 까지 + 형사소추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보고

세무보고

한국에서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 제 1 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 2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 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제세원-363, 2009.07.13)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지의 판단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 3 조에 따라 (1) 주거 (Permanent Home) 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2)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의 거주자,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 (Habitual Adobe) 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4)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 (Citizenship) 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5)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에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미국 거주자에게 한국에서 급여 (A) 를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 (B) 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 한국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한국 국세청에서는 한국급여 (A)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며, 미국 거주자로서 Tax Return 을 할 때, 전세계 소득 (A+B) 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한국내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미국 거주자가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 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 을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 신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가 있습니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 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0% (2010 년도 보유분에 대해서는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추가 부담되는 세금

한국에서의 이자소득이 백십만원, 근로소득이 천백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 및 캘리포니아 Taxable Income 이 \$74,000 (Married Filing Joint), 환율이 \$1 = KRW1,100 이라고 가정하면:

(1) 한국에서의 세금

- 이자소득에서의 원천세 15.4% (지방세 포함): 16 만 9 천 4 백원 (\$154)
- 근로소득에서의 원천세 6.6% (지방세 포함; ~ 1 천 2 백만원까지): 72 만 6 천원 (\$660)
- 한국에서의 총소득 1 천 2 백 1 십만원 (\$11,000) & 총 세금: 89 만 5 천 4 백원 (\$814)

(2)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

- Federal : 25% bracket -> \$10,358
- California: 6% bracket -> 2,468
- \$12,826

(3) 미국에 제대로 보고했을 때의 세금

- 한국에서의 총소득 1 천 2 백 1 십만원(\$11,000) 을 더하면, Taxable Income: \$85,000
- Federal : 25% bracket -> \$13,108
- California: 8% bracket -> 3,279 (6% bracket ends \$77,452)
- \$16,387 (한국에 냈던 세액공제전 미국 총세금)
- \$16,387 - 한국에서 낸 세금 Credit (\$814) = \$15,573

(4) 추가 부담되는 세금

- 세금 증가분 \$2,747 (= \$15,573 - \$12,826)

| | 한국 | 미국 | | | 한국 + 미국 각각 보고 |
|------------|--------|-----------|----------|----------|------------------|
| | | 미국소득만 | 전세계소득 | 차이 | |
| Federal | | \$10,358 | \$13,108 | \$ 2,750 | \$ 10,358 |
| California | | 2,468 | 3,279 | 811 | 2,468 |
| 미국 세금 | | \$12,826 | \$16,387 | \$ 3,561 | \$12,826 |
| 한국 세금 | \$ 814 | | (\$ 814) | (814) | 814 |
| 총 세금 | \$ 814 | \$ 12,826 | \$15,573 | \$2,747 | \$ 13,640 |

따라서,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 낸 것을, 단지 미국에 보고하는 것 만으로 \$2,747 만큼의 미국 세금이 증가하므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통한 절세대책은

